

#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2008. 5. .  
제출자 양주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”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#### 가. 관련법 인용 조항 변경(안 제3조제3호)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변경함

#### 나. 민간투자사업 심의 기능 명확화(안 제5조)

사회기반시설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능에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에의한 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”는 본 위원회가 대행 한다는 위원회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

#### 나. 보조금 지원받은 사람의 명확화(안 제28조)

“지원받은 사람”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“지원받은 국내·외 기업, 투자자”로 변경하고자 함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중 “제2조의”를 “제2조제1호의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국내·외기업 및”을 “국내·외기업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에 의한 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”는 본 위원회가 대행 한다)

제14조본문중 “①”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중 “법인 등에 대하여”를 “법인 등에”로 한다.

제18조중 “국내·외기업 및”을 “국내·외기업”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시장은 국내·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중 “산업단지개발사업의”를 “산업단지개발사업”으로 한다.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유치기업의 사후관리) 시장은 보조금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국내·외 기업,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·과·소		기획감사담당관실
일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회법무담당 김 정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김 정식(820-206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범위) 3. <u>제2조의</u> -----	제3조(적용범위) 3. <u>제2조 제1호의</u> -----
제4조(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) <u>국내·외기업 및</u> -----	제4조(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) <u>국내·외기업</u> -----
제5조(기능) 4. <u>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&lt;후단 신설&gt;</u>	제5조(기능) 4. <u>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에 의한 “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”는 본 위원회가 대행 한다)</u>
제14조(기금의 용도) <u>①</u> -----	제14조(기금의 용도) <u>&lt;삭제&gt;</u> -----
제17조(전문가 활용) <u>②</u> ----- <u>법인 등에 대하여</u> -----	제17조(전문가 활용) <u>②</u> ----- <u>법인 등에</u> -----
제18조(민간사무처리의 특례) <u>--- 국내·외 기업 및</u> -----	제18조(민간사무처리의 특례) <u>--- 국내·외 기업</u> -----
제19조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·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9조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) 시장은 국내·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21조(입지지원) <u>①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</u> -----	제21조(입지지원) <u>①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</u> -----
제28조(유치기업의 사후관리)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람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	제28조(유치기업의 사후관리) 시장은 보조금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국내·외 기업,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----- -----